

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92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7월 12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·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내·외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자격 및 구성 (안 제3조)
- 다. 임무 및 행위금지 (안 4조 ~ 안 제5조)
- 라. 예산지원 및 지원의 제한 (안 제6조 ~ 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- 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- 라. 기타사항 : 덧붙임
- 마. 입법예고 결과
 -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12. ~ 7. 17.
 - 의견 내용 : 입법예고 중

바. 부서의견(청년일자리과)

- 제6조(예산지원)과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함

⇒ 집행부 의견 반영
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, 피복 및 간식비
2.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

하남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·청소년의 선도·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학부모폴리스,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부모폴리스”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선도·보호 활동을 하는 각 초·중학교에 구성된 봉사단체를 말한다.
2. “학부모폴리스 연합단”이란 각 초·중학교의 학부모폴리스가 연합하여 대표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자격 및 구성) 학교폭력예방 활동 및 아동·청소년에 대한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를, 각 중학교에 중학교 학부모폴리스를 구성할 수 있으며, 자격 및 구성의 세부사항은 초등학교·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임무)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학부모폴리스 연합단(이하 “연합단”이라 한다)은 초등학교 내·외부에서, 중학교 학부모폴리스와 그 연합단은 중학교 내·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등·하굣길 통학로 주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
2. 학교 내 순찰 및 등·하굣길 교통지도
3. 아동·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 활동 및 교육·홍보
4. 학교폭력 예방 교육·홍보 등 치안봉사 활동 수행
5. 그 밖에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5조(행위의 금지) 누구든지 연합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영리목적으로 연합단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
2.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
3. 소송·분쟁·쟁의에 참여하는 행위
4. 그 밖에 연합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
제6조(예산지원) 시장은 연합단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연합단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비, 피복 및 간식비
2. 그 밖에 연합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

제7조(지원의 제한) 시장은 연합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3. 학부모폴리스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

키는 행위를 한 경우

제8조(중복지원의 금지) 학부모폴리스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한 예산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폴리스의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는 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·연구·교육·제도 등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2. 3. 21.>

■ 청소년기본법

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

(2024. 06. 24. 현재)

연 번	자치단체명	법 규 명	제 · 개정 일	소관부서	비고
1	경기도 광명시	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6-21	자치분권과	
2	경기도 시흥시	시흥시 어머니·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	2015-09-30	청년청소년과	